윤리운영위원회세칙

제 정 2013. 1. 15 개 정(1) 2014. 5. 28 개 정(2) 2016. 7. 12 개 정(3) 2016. 9. 29 개 정(4) 2019. 3. 20 개 정(5) 2020. 5. 7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한국투자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윤리·행동강령의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장은 준법감시인으로 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담당부서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 윤리담당부서는 준법지원실로 한다.

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준법지원담당부서장
- 2. 경영기획담당부서장
- 3.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
- 4. 투자기획담당부서장
- 5. 대체투자기획담당부서장
- 6. 인사담당부서장
- 7. 감사담당부서장
- 8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장
- ③위원회에는 안건 관련부서 임직원이 배석할 수 있다.
- ④위원회의 간사는 윤리담당부서장으로 한다.
- ⑤제5조2제1항제1호의 퇴직임직원 관련 거래제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할 경우에는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6항에 따른 기관에서 준법감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⑥위원장은 심의·의결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해당 위원의 출석을 제한할 수 있다.

- 제3조(역할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진행 및 제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부의안건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③윤리담당부서는 위원회의 개최통지 및 의사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4조(소집) ①위원장은 필요 시 또는 각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 위원장은 영업일 기준으로 회의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명시하여 각위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.
 - ③위원장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이해상충 또는 정보교류차단장치(Chinese Wall)등의 이슈가 있는 위원의 경우 출석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
- 2.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3.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에 대한 유권해석
- 4. 윤리ㆍ행동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
- 5. 윤리경영 관련 위반사항의 신고 접수, 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사항
- 6. 윤리경영 관련 준수여부 점검, 평가, 포상 및 위반행위자 징계 등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윤리경영실천과 윤리강령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의2(심의·의결사항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퇴직임직원 관련 거래제한 사항
- 2.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과 관련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- **제6조(회의록)** ①윤리담당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.
 - ②회의록에는 주요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등을 기재하며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한다.
- 제7조(회의결과의 보고 및 처리) ①위원회 회의결과는 각 출석위원이 확인한 후 사장에게 보고한다.

②위원회 회의결과의 조치사항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조치결 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.

제8조(위원회 운영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3년 1월 15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7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9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5월 7일 부터 시행한다.